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기준 마련〉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6호)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 · 이소영 · 김승원 · 전진숙 · 임미애 · 강준현 ·
서영교 · 오세희 · 이기현 · 민형배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9.

3. 회 부 일 : 2024. 8. 12.

※ 의안번호 : 2676

II. 제안이유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의 옷차림에 관한 규범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에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5조)”고만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옷차림을 한 의원에게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여름철에도 국회에서 정장 착용을 강제해온 기존 관행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국회의원 옷차림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하절기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소매가 짧은 상의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 다. 하절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IV. 검토의견

1. 규칙안의 제정 취지

규칙안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원의 복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나, 국회 내에서는 대체로 격식을 갖춘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자 행동 규범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에도 국회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실내 냉방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에너지 낭비가 유발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소 노력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칙안은 국회의원이 하절기에 보다 편안하고 간소화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성을 제고하고 탄소 중립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2. 규칙안의 주요내용

규칙안은 총 4개 조문과 시행일에 대한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동 규칙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1)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 이슈와 논점 제1746호, 2020.9.

로써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안 제2조).

셋째,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하여 ①소매가 짧은 상의, ②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③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또는 이에 준하는 옷차림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넷째, 동 규칙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및 그 밖에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적용되며, “하절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의 기후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

[표-1] 규칙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달성에 이바지함
제2조 (국회의원 옷차림의 기본원칙)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제3조 (하절기 옷차림)	○ 소매가 짧은 상의 ○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제4조 (적용 범위)	○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및 그 밖에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적용 ○ 적용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기후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규칙안은 국회의원이 하절기에 소매가 짧은 상의, 넥타이나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간소화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하절기 업무능률과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규칙안의 제정 여부는 국회의원의 옷차림에 관한 오랜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및 규칙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규칙안은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규칙안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2조의 제목은 “국회의원 옷차림의 기본원칙”으로 계절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옷차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규칙안의 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조 제목을 “국회의원 하절기 옷차림의 기본원칙”으로 수정하고,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은 에너지 절약과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간소하고 단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안 제3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을 ①소매가 짧은 상의, ②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③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옷차림이 제2조에 따른 기본원

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문언의 내용과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하절기 옷차림과 이에 준하는 옷차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법제적 사항으로서 규칙안 조문의 규정 취지, 규칙안의 시간적·공간적 적용 범위 설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표-2] 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 (예시)

규 칙 안	수정의견(예시)
제2조(<u>국회의원 옷차림</u> 의 기본원칙) <u>국회의원의 옷차림</u> 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u>국회의원 하절기 옷차림</u> 의 기본원칙) <u>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u> 은 <u>에너지 절약과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간소하고 단정하여야 하며</u> ,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하절기 옷차림) ①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u>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옷차림 또는 이에 준하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1. 소매가 짧은 상의 2.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3.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제3조(하절기 옷차림) ①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u>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옷차림 또는 이에 준하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1. 소매가 짧은 상의 2.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3.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② 제1항의 옷차림이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 옷차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및 그 밖에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항의 하절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기후 또는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옷차림 또는 이에 준하는 옷차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및 그 밖에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국회의원 하절기 복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하절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기후 또는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14